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-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
하여 재활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
가를 증원하여 심의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2조의2)
- 나. 올바른 약칭 사용을 위한 구문 정비(안 제3조 및 제5조)
- 다. 위촉직 위원 증원을 위한 운용심의위원회 정원증원(안 제5조의2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
- 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: 2025. 7. 10.~7. 30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“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”을 “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“마포구””를 ““구””로, “마포구가”를 “구가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마포구”를 “구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중 “6명”을 “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2명”을 “4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<u>제2조</u> <u>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</u> <u>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</u> <u>지로 한다.</u>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<u>기금</u> <u>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</u> <u>일까지로 한다.</u>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 <u>마</u> <u>포구</u> ”라 한다) 관할지역에서 <u>마포구가</u> 직접 수집하는 재활 용품의 판매대금 2. ~ 4. (생 략)	제3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 1. ----- “ <u>구</u> ” ----- <u>구가</u>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구청장 은 기금을 <u>마포구</u> 금고에 예치 · 관리하여야 하며, 기금운용계 획에 따라 수익과 안정성이 보 장되도록 관리·운용하여야 한 다.	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----- ----- <u>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6명</u> 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. ③ (생 략)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	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8명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

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(생 략) 2. 기금운용 또는 청소·재활용 관련 민간전문가 <u>2명</u> ⑤ ~ ⑧ (생 략)	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4명</u>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개정안 제5조의2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제2항 및 제4항
 - ※ 민간심의위원 증원에 따른 심의수당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 - ※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지출 계획 변경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	지출 계획 변경안			
정책-단위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부기	예산현액	증-감	최종예산
깨끗한 생활환경 조성	자원재 활용 사 업(재활 용품 판 매대금 관리기 금)	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	일반운영 비 (201)	사무관리비 (01)		130,304	0	130,304
					기금운용심 의위원회 참 석수당	구 800	구 800	구 1,600
					재활용 및 분 리배출 홍보 물 제작	구 20,000	구 △800	구 19,200

※ 동일한 통계목의 지출금액 조정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엔 변동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이창헌
연 락 처	02-3153-9216